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만화·웹툰은 단순한 문화 향유 분야를 넘어 창작, 제작, 유통, 지식재산(IP) 활용 및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송파구 또한 청년층과 지식기반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창작공간 및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6. 1. ~ 2026. 6. 8. (8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i@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